

번역 학습자의 ‘voice’ 선택과 개입: 법률텍스트 ‘전문용어’ 일한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박 미 정
(한국외국어대)

1. 들어가기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학텍스트나 법률텍스트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문서의 ‘전문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번역가에게 있어 중요한 번역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체(style)¹⁾의 선택 과정에서 번역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번역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문체의 정의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체의 정의는 박양근(2001, 55)이 설명하는 정의와 가장 흡사하다. “문체(style)는 산문이나 운문의 표현양식으로서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작품이나 작가의 특징적인 문체는 어법(diction)에서 구분된다. 즉, 무슨 단어를 선택하는가, 어떤 문장구조와 구문을

에 개입을 하게 된다. 예컨대 의학텍스트 번역의 경우, 번역자는 ‘디스크’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추간관헤르니아(추간관탈출증)’와 같은 전문 의학용어로 번역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때 상기 두 전문용어는 같은 대상(object)을 의미(represent)하고 지시(referent)한다. 만약 번역자가 ‘추간관헤르니아’라는 전문용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텍스트는 전체적으로 ‘디스크’라는 술어(terminology)를 선택한 텍스트보다 권위적이고 기술적이며 딱딱하고 친숙하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된다. ‘법률언어’(the language of the law)인 특수 언어로 구성된 법률텍스트(Mellinkoff 1963: 3)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일본어텍스트 ‘有責配偶者’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어렵고 딱딱한 ‘유책배우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유책배우자(혼인의 파탄상태를 초래한 배우자)’ 또는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 등 의미를 확장/명시화시켜서 친절하게 번역해줄 것인지 번역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일한번역수업에서 번역 학습자들은 ‘법률텍스트’의 ‘전문용어’ 역을 ‘기술적인 언어’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 용어’로 처리할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번역의 목적과 대상을 기재한 ‘번역 브리프’가 번역과제와 함께 사전에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번역 학습자들(예비 번역사들 내지는 초보 번역사들)은 여전히 ‘전문용어’ 번역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번역교육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능주의 이론²⁾에서는 번역자가 번역 스타일과 번역관련 결정을 하는 번역지침으로서 ‘번역 브리프’를 강조한다. 특히 목표텍스트 지향적인 스킵스 이론³⁾에서는 수신자(receiver), 혹은 그보다 최종수신자(addressee)가 TT의 스킵스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본다(Nord

즐거 구사하는가...(중략) 문체의 구성요소로는 어휘(diction)와 구문(syntax)이 있다. 어휘는 작가의 사상, 태도,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으로 작가의 지식과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교육적 배경을 드러내며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굵은 부분은 필자 강조)

- 2)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번역 교육을 지향하여 발전된 것이며, 번역 교육은 여전히 이러한 접근법들이 가장 유용한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중략) 교육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번역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려면, 기능주의 이론이 필요하다(Nord 1997, 39).
- 3) 페르미어(Vermeer)는 ‘스킵스 이론’을 목적성 있는 행위의 이론이라고 부른다(ibid, 12).

1997: 29). 따라서 번역을 읽을 대상이 '일반인'이라면 유책배우자(혼인의 파탄 상태를 초래한 배우자)'나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 등의 번역 문체를 선택하고, 번역을 읽을 대상이 같은 직종의 '법률전문가'라면 '유책배우자'로 번역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학습자들의 번역 결과물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것은 번역 학습자들에게 번역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번역 브리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는 한국의 3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온라인판 한일번역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같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 목적 및 기능도 동일(동일 '번역 브리프')한 신문기사(동일 '장르')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ST)에 대해 '狂牛病'(TT)으로 번역한 기사가 있는가 하면 'BSE(牛海綿狀腦症)'(TT)로 번역한 기사도 있다. 이렇게 번역자는 기술텍스트 '전문용어' 번역에 있어서 외연적으로 명시화해서 전달할 '정보의 양'을 번역 과정에서 조절하게 되고, 이러한 번역자의 개입 결과 TT는 학술적이고 건조하며 전문적인 색채를 띠 수도 있고, 친숙하고 유연하며 거리감 없는 톤으로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 '스코포스 이론'에서 강조하는 '번역 브리프'는 과연 번역자, 특히 번역 학습자가 '전문용어'번역시 '정보제공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본고에서는 번역교육을 받는 이러한 번역 학습자(예비 번역사)들이 번역 행위자로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법률텍스트⁴⁾ '전문용어'에 대한 일한번역을 중심으로 분석,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예비 번역사들이 법률텍스트 '전문용어'를 번역할 때 '번역브리프'에 명시된 예상독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Mossop의 'voice'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고찰하고 번역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앞 장에서 기술한 연구 목적 하에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4) 일반 텍스트와는 달리 법률텍스트에는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명령, 규범, 규정 등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과 내용이 그 어느 텍스트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지선 2009, 66).

는 다음과 같다.

1. 비슷한 조건(비슷한 번역능력과 배경지식)의 복수의 번역 학습자들은 동일한 ‘번역 브리프’상황 하의 동일 법률텍스트 ‘전문용어’에 대해 서로 같은 ‘voice’를 선택하는가?
2. 다른 종류의 법률텍스트 ‘전문용어’번역을 할 때 ‘번역 브리프’가 동일하다면 동일 번역 학습자는 두 텍스트 간에 ‘voice’를 일관되게 선택하는가?
3. 번역 학습자들은 ‘번역 브리프’를 제대로 파악하고 번역훈련을 하고 있는가?

상술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통번역대학원 번역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자들의 ‘번역결과물’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법률텍스트 번역으로 데이터를 한정하고, ‘전문용어’번역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번역결과물을 발췌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번역수업은 ‘스코포스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번역 브리프’가 사전에 제시된 상태이다. 번역 참여자는 총 10명의 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다.

본 논문은 본질적으로 정태적인 ST-TT의 언어학적, 텍스트 중심적인 대조 분석에 머무르지 않는다. 본 논문의 목적은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 학습자가 ‘번역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번역결정을 하는 현상의 차이에 주목하고 이를 기술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번역결과물이 ‘ST지향적’ 번역인지, ‘TT지향적’ 번역인지를 따지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번역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역접근법에는 ‘번역 행위자’로서의 번역자(번역 학습자) 자신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Mossop이 제안한 ‘voice’⁵⁾이론은 번역자가 스스로 텍스트의 ‘문체’를 어떻게 선택하고 ‘목소리’를 어떻게 설계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본고에서 사용하는 ‘voice’의 개념은 대체할 단어들(alternate wordings) 중에서 선택한 결과, 즉 문체 선택(stylistic choices)의 결과를 나타낸다(Mossop 2007, 18).

2. 이론적인 배경

2.1. 법률텍스트 번역과 스코포스 이론

기능주의 이론의 대표 학자인 노르트는 지시적 기능이 지배적인 번역에서 원천텍스트에서 주어진 정보는 다른 어떤 기능이나 하위기능보다 우선시될 것(Nord 1997: 77)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스(Reiss)가 주창한 텍스트 유형론에 따르면 '법률텍스트'는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s)에 해당된다(Reiss & Vermeer, 1991, 안인경 외 역 2010: 188). 이러한 정보적 텍스트의 주요 기능은 독자에게 실제 세계의 사물과 현상을 알리는 것이다. 언어적 형태와 문체적 형태는 이 기능에 속한다(Nord 1997, pp. 37-8). 특히 '법률텍스트'에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방적(prescriptive) 성격이 있어 이러한 텍스트에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텍스트의 기능은 텍스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성격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Harvey 2002). 이렇게 '정보 전달'과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갖고 있는 '법률텍스트'번역에는 페르미어(Vermeer)의 '스코포스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페르미어는 자신의 이론을 스코포스 이론, 즉 목적성 있는 행위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의 틀 안에서 볼 때 번역의 목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수신자(addressed)이다. 수신자는 문화 특유의 세계 지식, 기대, 소통적 니즈를 가지고 있는 목표 텍스트의 '의도된' 수신자 또는 오디언스이다. 모든 번역은 의도된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한다(ibid, 12). 왜냐하면 번역한다는 것은 "목표 상황에서 목표로 하는 목적을 위해 목표 수신자를 대상으로 목표 배경 속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Vermeer 1987a, 29). 번역을 하나의 행위(act)로 보는 스코포스 이론에서 행위 주체자(agent)로서의 번역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자는 번역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번역 브리프'(의뢰자의 지시사항)와 원천텍스트의 수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Vermeer 1989b, 174). 다음 절에서는 번역주체자로서의 번역자를 살펴보고 번역교육 현장에서 상술한 '번역 브리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2.2. '텍스트' 중심→'번역 행위자' 중심

모든 번역자는 번역어를 선택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번역에 개입을

한다. 이 때 번역가는 번역 행위의 주체로서 번역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생산한다. 따라서 원천텍스트(ST)와 번역텍스트(TT)간의 비교분석으로 한정되기 쉬운 번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번역 행위자에 대한 탐구를 통해 번역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행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Chesterman 2009). 번역 행위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역설한 강지혜(2010)에 따르면 번역학에서는 언어 중심적, 텍스트 중심적 논의를 넘어 최근 ‘번역 주체’(translating agent)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p.5). ‘번역 주체’는 비단 경험이 풍부하고 저명한 번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만은 아닐 것이다. 실무적인 번역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번역 학습자들(예비 번역사들) 역시 번역 텍스트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엄연한 ‘번역주체’이다. 비록 이들의 번역 텍스트가 최종 독자에게 읽히지 못하고 사장되는 훈련용일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TT를 읽을 독자들을 마음속에서 이미지화해가면서 번역 용어를 선택하고 문체를 결정하게 된다. “번역이론은 실제 번역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Mossop 1998, 46). 이러한 ‘번역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번역학 내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조상은(2004)이 인정한 것처럼 번역학에서 과정지향적인 연구인 TAP⁷⁾이 주목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번역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태생적인 한계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pp. 58-9). 특히 TAP은 번역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번역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판단 과정을 계속 들여다봐야한다는 실험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번역결과물을 통해 번역학습자가 번역주체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그 과정을 추측해볼 수 있는 Mossop의 ‘voice’도식은 ‘번역 학습자’의 번역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voice’도식을 번역학습과정에 도입해 번역 학습자에게 스스로를 ‘번역주체’로서 자각시키고 그들이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번역 문제를 좀 더 적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그동안 번역수업의 주안점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했을 때 학습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번역 후의 과정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이미경 2012, 141).

7) 사고발화법(Think-Aloud Protocol)의 약어.

2.3. 번역 브리프

노르트(Nord)는 그녀의 저서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1997)에서 번역 교육에 있어서 번역 브리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번역 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번역 학습자는 원천텍스트만으로는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야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모든 번역 과제에는 목표텍스트가 텍스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규정하는 브리프가 수반되어야 한다(ibid, 59). 이러한 '번역 브리프'는 직관적인 기준에 의존해 온 번역 학습자들이 원천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번역의 기능과 목적을 추정할 수 있도록 번역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번역 브리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의도된) 텍스트 기능(들)
- 목표 텍스트 최종수신자(들)
- (예기된) 텍스트 수용의 시간과 장소
- 텍스트의 발신 매체(medium)
- 텍스트 생산이나 수용의 동기(motive) (ibid, 60)

2.4. Mossop의 'voice' 이론

2.4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분석 이론이 될 Mossop의 'voice'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Mossop, ed. Munday 2007, pp. 18-37).

2.4.1. 'voice' 개념

Mossop(2007)은 모든 텍스트, 따라서 모든 번역은 독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소리'⁸⁾로 말을 건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목소리'는 번역자의 문체 선택 결과이다. '목소리'의 가능성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번역자의 '목소리' 선택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는 기술적으로 들리게 만들 수도 있고 기술적이지 않게 들리도록 만들 수도 있으며 친숙하게 들리게 만들 수도 있고 거리

8) Mossop이 제안하는 '목소리(voice)'는 어휘적, 구문론적인 문체 선택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술어이다. 이것은 신체적인 목소리(육성)와는 구분되는 메타포적인 개념이다(ibid. pp.23-4).

감 있게 들리게 만들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들리게 만들 수도 있고 화려하게 꾸미거나 예두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Mossop은 구체적으로 번역가들이 선택하는 3가지 ‘목소리’ 타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번역자는 ‘자신의 목소리’(my voice)로 쓸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즉 번역가의 목소리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문체 중립화(Neutralizing: N)**로 부를 것이다.
2. 번역자는 ‘당신의 목소리’(your voice)로 쓰는 접근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번역자가 보고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쓰는 방식이고 보고를 받는 사람은 그 번역을 읽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복화술(Ventriloquizing: V)**로 부를 것이다.
3. 번역자는 ‘그녀의 목소리’(her voice)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원천 언어(SL)로 된 텍스트를 쓴 사람(저자)의 목소리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리 두기(Distancing: D)**로 부를 것이다. (ibid, 19)

3가지 ‘목소리’ 타입 가운데 우선 ‘중립적인 목소리’는 번역자가 자신의 문체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번역자 자신이 전기기술자라면 기술적인 용어인 ‘EMF’를 사용하겠지만, 번역자 자신이 전기기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자기장’ 또는 ‘전자기장(EMF)’ 등의 비교적 평이한 문체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전기기술자인 번역자가 평이한 술어인 ‘전자기장’을 선택하는 것 역시 ‘중립적인 목소리’에 해당한다. 기술자는 전문용어를 업무상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일상용어 역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화술 목소리’는 번역자가 TT를 읽을 독자, 또는 TT의 ‘목소리’를 들을 오디언스의 ‘목소리’로 텍스트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번역자가 전기기술자가 아닌 경우라도 TT를 들을 오디언스가 전기기술자라면 번역자는 전기기술자의 ‘목소리’, 즉 ‘당신의 목소리’인 ‘EMF’로 번역 문체를 쓰기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번역자가 전기기술자이지만 TT 독자가 일반인이라면 번역자는 역시 ‘당신의 목소리’인 ‘전자기장’ 등으로 쉽게 풀어서 번역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자는 텍스트의 ‘목소리’를 만들면서 ‘거리두기 목소리’로 설계

9) Mossop은 행위의 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원천텍스트 저자는 ‘그녀’(She)로 지칭하고 번역가는 ‘나’(I) 또는 ‘그’(He)로 지칭한다고 밝히고 있다(ibid. 19).

할 수도 있다. 마치 현재 '내'(번역자)가 '당신'(독자)에게 말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장소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제3자'의 '목소리'를 만들어 간다. 상기 예를 다시 적용해보자. ST는 전기기술용어로 가득한 '연구보고서'이다. 그리고 번역자와 독자는 모두 전기기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 등을 내세우며 'EMF'와 같은 어려운 기술용어를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그대로 번역문체로서 선택하기로 한다. 이것은 '거리두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소리' 설계방식은 '당신'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역자가 반드시 이러한 문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Mossop이 설명하는 '목소리'는 개인적인 문체(그것이 번역자의 문체인든, ST의 저자의 문체인든)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문체 선택(가령, 의학전문용어로 쓸까?, 비성차별적 문체를 사용할까? 등)와 관련된 것이다. Mossop이 보여준 예를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p.34). 예를 들면 '프로스트'에 대한 번역에서 번역자는 TL의 어떤 장르에서도 그렇게 장황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ST 저자의 극단적으로 장황한 문장을 흉내 내기로 결정(과도한 만연체)할 수 있다. 이것은 '거리두기' 목소리에 해당하는가?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문체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2. 'ST 지향적' vs 'TT 지향적' 접근방식과의 차이

상술한 'voice' 이론 가운데 '복화술'은 'TT 지향적' 번역접근방식과 대동소이하고 '거리두기'는 'ST 지향적' 번역접근방식의 새로운 이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Mossop은 자신이 제안한 3개의 '목소리' 도식은 이러한 'ST 지향적'/'TT 지향적' 번역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한다(ibid. pp.22-23). 우선 가장 큰 차이는 'ST/TT 지향적'인 번역접근방식이 2분법적인 번역이론인데 반해 'voice'이론은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원천 중심' vs '목표 중심'의 구분에는 '중립화 목소리', 즉 '번역자 자신의 목소리'에 대응되는 부분이 없다. 둘째 'voice'이론은 전달받는 담화상황에서 번역자와 다른 요소들(ST 저자, 독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이 이론은 번역자의

‘정신 상태’(mental state)와 관련이 있다. 번역자가 특정 ‘목소리’를 설계하기 위해 준비할 때, ‘당신’ 그리고 ‘그녀’는 번역자의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상징화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천 지향적’ vs ‘목표 지향적’ 접근방식은 텍스트의 형태(textual form)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자가 ST의 언어적인 형태의 일정 측면을 재현(represent)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번역은 ‘원천텍스트 지향적’인 번역이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목적을 가지고 번역자가 마음속에 이미지화한 ‘그녀’의 목소리로 TT를 설계한다면 번역자가 역시 마음속에서 이미지화한 ‘오디언스’인 ‘당신’은 TT를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통해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리두기 목소리’가 된다. ‘voice’ 이론은 오직 ‘번역자’의 ‘목소리 설계’ 작업과 관련이 있고 텍스트가 아닌 ‘번역자’ 중심적인 이론이다.

2.4.3. 번역자 문체 선택에 따른 ‘voice’ 분류와 분석 적용

상황	ST 문체	번역자	독자	번역자 문체 선택	voice 결과
1	법학전문용어	변호사	변호사	법학전문용어	N
2	법학전문용어	변호사	변호사	일반용어	N
3	법학전문용어	일반인	변호사	법학전문용어	V
4	법학전문용어	일반인	변호사	일반용어	N
5	법학전문용어	변호사	일반인	법학전문용어	N
6	법학전문용어	변호사	일반인	일반용어	N
7	법학전문용어	일반인	일반인	법학전문용어	D
8	법학전문용어	일반인	일반인	일반용어	N
9	일반용어	변호사	변호사	법학전문용어	N
10	일반용어	변호사	변호사	일반용어	N
11	일반용어	일반인	변호사	법학전문용어	V
12	일반용어	일반인	변호사	일반용어	N
13	일반용어	변호사	일반인	법학전문용어	N
14	일반용어	변호사	일반인	일반용어	N
15	일반용어	일반인	일반인	법학전문용어	제4의 목소리
16	일반용어	일반인	일반인	일반용어	N

〈표 1〉 번역자의 문체 선택에 따른 voice 분류

<표 1>은 번역자의 문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voice' 결과를 16가지 상황변수에 따라 정리한 표(ibid, 25)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의 ST를 '법학전문용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 1>에서 1번~8번(ST문체→법학전문용어)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상정하는 번역자는 번역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학습자(일반인)이기 때문에 1번~8번 중 3,4(번역자→일반인)번과 7,8번(번역자→일반인)만으로 다시 범위가 압축되게 된다. 다시 말해 제 3장에서 사용할 분석 항목은 3,4,7,8 상황이 될 것이다. 한편 Mossop은 15번에 대해 3개의 '목소리' 중 어떤 '목소리'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일반인 번역자'가 ST의 '일반용어'를 '일반인 독자'에게 굳이 어려운 '전문용어'로 번역한다면 결국 이 번역행위는 의사소통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수로서는 존재하지만 고려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ibid, 32).

3. 분석

본 논문에서는 1.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한번역수업시간에 다른 법률 텍스트 가운데 대표적으로 3개의 텍스트를 발췌하고 그 가운데 '전문용어' 번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두 번째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분석텍스트와 두 번째 분석텍스트의 예상독자는 동일(일반인)한 '번역 브리프'를 선정했다. 따라서 case1(3.1절)에서는 '법률전문용어(ST)-비법률전문가, 즉 일반인(번역자)-일반인(예상독자)'의 상황에서 번역자가 '목소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보고, case2(3.2절)에서는 case1과 동일한 관계 속에서 동일 번역자가 동일 '목소리'를 설계해가는 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case3(3.3절)에서는 '법률전문용어(ST)-비법률전문가, 즉 일반인(번역자)-법률전문가(예상독자)'의 관계, 즉 예상독자가 '법률전문가'일 때 번역자의 '목소리'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분석한다. 분석표에서 번역자를 가리키는 '번호'는 모두 일정하게 매겼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석 텍스트를 번역한 '번역자 1'은 두 번째 분석 텍스트와 세 번째 분석텍스트의 '번역자 1'과 동일인이다. 본고의 분석에서 번역가는 '비전문가' 즉, '비법률전문가'로 한정된다. 분석 대상으로 하는 번역자는 모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ST 역시 분석 변수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법률전문용어’로 한정하기로 한다.

3.1. ‘일반인’ 예상독자 - case 1.

번역 브리프 1	
예상독자	저작권, 초상권 침해 관련 일반 소비자
번역 목적	변호사 사무실(한국) 홍보
번역개재 매체	변호사 사무실(한국) 홈페이지
<SL저자-번역자-예상독자>	
SL 저자	법률전문가(변호사)
번역자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 한일과 2학년
예상독자	저작권, 초상권 침해 관련 일반 소비자

<표 2>

case 1.의 ST는 일본의 ‘저작권 침해’관련 홈페이지 내용이다. ‘번역 브리프’는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이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번역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SL 저자→법률전문가’이고, ‘번역자→번역 학습자’가 되며, ‘예상독자→일반인’이 된다. 따라서 case 1.에서 나올 수 있는 ‘voice’는 ‘중립화(N)’와 ‘거리두기(D)’뿐이다. 2.3.3에서 Mossop이 분류한 7,8번에 해당한다.

ST 문체 (전문용어)	번역자 (일반인)	번역자 선택 문체	비고
1. <u>パブリシティ</u> 權侵害의 問題 직역: <u>퍼블리시티권</u> 10) 침해문제	1.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거리두기 8명 중립화 2명
	2.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3.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4. <u>사생활권</u> 침해문제	N	
	5.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6.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7. <u>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자)</u> 침해문제	N	
	8.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9.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10.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	D	
2. 東京地裁 직역:도쿄지재 (도쿄지방법재판소의 출입말)	1.도쿄 지방 법원	N	거리두기 5명 중립화 5명
	2.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	D	
	3.도쿄지방법재판소	D	
	4.도쿄지방법재판소	D	
	5.도쿄지방법원	N	
	6.도쿄지방법재판소	D	
	7.도쿄지방법원	N	
	8.도쿄지방법재판소	D	
	9.일본도쿄지법	N	
	10.도쿄지방법원	N	
3. 発信者情報開示請求 직역:발신자정보개시청구	1.발신자정보개시청구	D	거리두기 3명 중립화 7명
	2.발신자정보공개청구	N	
	3.등록회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략) 발신자정보개시청구	N	
	4.발신자정보개시청구	D	
	5.발신자정보공개청구	N	
	6.발신자정보공개청구	N	
	7.발신자정보공개요구	N	
	8.발신자정보공개청구	N	
	9.발신자정보개시요청	D	
	10.발신자정보공개요구	N	

〈표 3〉

1번의 ‘パブリシティ権(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번역은 4번 번역자가 ‘사생활권’으로 7번 번역자가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자)’으로 번역¹¹⁾했다. 이것은

10)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487&mobile&categoryId=121>)

11)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번역자가 번역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설계하고 있고, 그러한 문체 결정이 ‘번역 브리프’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가 퍼블리시티권을 ‘사생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자)’으로 번역한 결과물의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번역자가 ‘일반인 독자’를 ‘예상독자’로서 마음속에 이미지화해가면서 ‘나의 목소리’ 즉 ‘번역자의 목소리’로 번역을 한 것이다. 배경지식의 정도에 따라 일반 독자들도 법률전문용어인 ‘퍼블리시티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문맥 속에서 대강의 의미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독자’라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검색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4번과 7번 번역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번역자들은 모두 ‘그녀의 목소리’ 즉 ‘저자의 목소리’로 번역해주고 있고 이것은 ‘거리두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지금(now)’ ‘여기서(her)’ 번역자가 독자에게 ‘나의 목소리’ 또는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없는 텍스트가 쓰여진 곳(there)에서 들려오는 ‘제3의 목소리’로 번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문체이다. 특히 ‘번역 브리프’에서 제시한 번역 목적과 번역 대상독자를 고려해볼 때 ‘거리두기’목소리 설계가 많았다는 것은 학생들의 ‘번역 브리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東京地裁(도쿄지재)’는 ‘거리두기’와 ‘중립화’번역이 각각 5명씩으로 나뉘었다. ‘도쿄지재’는 ‘도쿄지방법관소’의 줄임말로 한국의 ‘서울지법’에 해당하는 ‘고유명사’성격의 ‘전문용어’이자 ‘문화소12)’이다. ‘지방법관소’는 ‘지방법원’의 구식명칭¹³⁾으로 일본어의 ‘地方裁判所’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 예이다. 따라서 전문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방법관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자나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중립화’번역 중 어느 한 쪽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학습자들의 번역어 선택이 ‘거리두기’와 ‘중립화’의 5대5로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보아도 그 선택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독자’에게 가까운 ‘목소리’로 번역할지, ‘독자’에게 먼 ‘목소리’로 번역할지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 결과에 따라 텍스트가 친숙한 ‘문체’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이국적인 ‘문체’로 구성될

12) 페르미어(Vermeer)가 명명한 ‘문화소’(culturemes)(1983a, 8)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 유관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의 사회적 현상이며, 비교되는 두 문화 중 오직 한 문화에서만 특정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현상이다(Nord 1997, 34).

13) 네이버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664200>)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번역자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發信者情報開示請求(발신자정보개시청구)’에서 ‘開示(개시)’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의 일본어로 한국어에서는 ‘공개’라는 술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開示(개시)’는 ‘시작’의 의미인 ‘개시(開始)’와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개시’로 번역하게 되면 의미의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즉 ‘발신자정보시작’의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대부분 ‘개시’라는 술어에 저항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로 중립화시켜서 번역(중립화 번역 7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발신정보개시’라는 ‘전문용어’는 한국어에서도 학술적인 텍스트 장르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갖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이라면 정보전달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앞선 2개의 전문용어(퍼블리시티권, 도표지재)와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어로의 번역어 ‘발신정보개시’가 가장 낮설고 어색하다. 이렇게 명확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전문용어’에 대해 번역자는 그것이 통용되는 ‘전문용어’라는 사실을 인식¹⁴⁾하고 있어도 대체로 ‘자신의 목소리’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에 개입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 ‘일반인’예상독자-case 2.

번역 브리프.2	
예상 독자	일반인
번역 목적	법무법인 한우리 이혼소송연구소 홈페이지 소개
번역계재 매체	법무법인 한우리 이혼소송연구소 홈페이지
<SL저자-번역자-예상 독자>	
SL 저자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번역자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 한일과 2학년
예상 독자	일반인

〈표 4〉

case 2.는 일본의 ‘이혼소송관련절차’ 내용을 한국의 이혼소송변호사 홈페이지

14) 번역수업 시간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이 특정 전문용어에 대한 번역어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들어볼 수 있다.

지에 신기 위한 번역 중 일부이다. 예상독자는 case 1.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인’이 된다. ‘SL저자-번역자-예상 독자’의 관계는 case 1.과 동일하다. 따라서 case 2.에서도 번역사의 ‘voice’선택은 ‘중립화(N)’와 ‘거리두기(D)’밖에 나올 수가 없다. 2.3.3에서 설명한 7,8번에 해당한다.

ST 문체 (전문용어)	번역자 (일반인)	번역자 선택 문체	비고
1.裁判離婚 직역: 재판이혼	1.재판이혼 2.재판이혼 3.재판이혼 4.재판이혼 5.재판이혼(한국의 재판상 이혼/ 심판이혼에 해당) 6.재판상 이혼 7.재판이혼 8.재판이혼(한국의 재판상이혼에 해당) 9.재판이혼 10.재판상 이혼	D D D D N N D N D N	거리두기6명 중립화 4명
2.公序良俗 직역: 공서양속	1.공서양속 2.공공질서와 미풍양속 3.공서양속 4.미풍양속 5.공서양속(公序良俗) 6.공공질서 7.미풍양속 8.공서양속 9.공공질서와 미풍양속 10.미풍양속	D N D N N N N D N N	거리두기3명 중립화 7명
3.「家庭裁判所調査官」 직역:가정재판소조사관	1.가정법원조사관 2.가정법원 조사관 3.가정법원조사관 4.가정법원조사관 5.가정법원조사관	D D D D D	거리두기 10명 중립화 0명

6.가정법원조사관	D
7.가정법원조사관	D
8.가정법원조사관	D
9.가정법원조사관	D
10.가정법원조사관	D

<표 5>

2번의 '公序良俗(공서양속)'은 1번의 '裁判離婚(재판이혼)'과 3번의 '家庭裁判所調査官(가정재판소조사관)'에 비해 번역자의 '중립화 목소리' 선택(7명)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표 4>의 '발신자정보개시청구'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 스스로 '한국어'로서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번역투로 보이는 '번역어'에 대해서는 '번역 브리프'나 '텍스트 장르(법률 텍스트)'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개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서양속'역시 학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로 '거리두기 목소리'를 선택한 3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공서양속'이라는 문체를 선택했다. 반면, 1번의 '裁判離婚(재판이혼)'과 3번의 '家庭裁判所調査官(가정재판소조사관)'에 대해서는 번역자들이 '거리두기 목소리'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상술한 '전문용어'들이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되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재판상이혼' 또는 '심판이혼'으로 통용되지만 '재판이혼'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3번의 '家庭裁判所調査官(가정재판소조사관)'에 대해서는 10명의 번역자가 모두 '가정법원조사관'이라는 전문용어를 선택했고 이는 100% '거리두기 목소리'에 해당된다. 이 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家庭裁判所(가정재판소)'를 '가정법원'으로 번역한 것은 <표 4>의 '東京地裁(도쿄지재)'를 '도쿄지방법원'으로 번역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 선택이라는 것이다. '東京地裁(도쿄지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쿄지방법원'로 번역하는 것이 '번역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家庭裁判所(가정재판소)'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가정재판소'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투'가 된다. 따라서 번역자들이 번역 문체로 선택한 '가정법원조사관'은 '번역투'를 피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家庭裁判所調査官(가정재판소조사관)'에 해당하는 '가사조사관'이 있고 담당하는 역할도 완전히 흡사하다. 따라서 1번의

‘裁判離婚(재판이혼)’에서 ‘중립화 목소리’로 번역했던 번역자들은 3번 번역에서도 ‘중립화 목소리’로 번역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번역자들은 ‘번역투’에 대한 경계는 하면서도 한국어로 어색하지 않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목소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노르트의 지적처럼 번역자는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문화적인 ‘의사 등가어’의 뒷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Nord 1997, 91).

3.3. ‘법률전문가’ 예상독자

번역 브리프	
예상 독자	한국 변호사
번역 목적	한일변호사협회간담회 통역 자료
번역계제 매체	한일변호사협회간담회 책자
<SL저자-번역자-예상 독자>	
SL 저자	일본 변호사
번역자	한국의대통번역대학원 한일과 2학년
예상 독자	한국 변호사

〈표 6〉

<표 6>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협회의 정기 교류간담회에서 다뤄진 실제 번역 자료를 사용했다. 번역 목적은 통역 회의장에서 일본 변호사측의 발표자료 내용을 한국 측 변호사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상독자는 법률전문가인 한국 ‘변호사’가 된다. 예상독자가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선 3.1절 및 3.2절과는 다른 번역자의 ‘voice’선택이 예상된다. 여기서 ‘SL저자-번역자-예상독자’는 ‘법률전문가-일반인-법률전문가’가 된다. 따라서 번역자는 ‘전문용어’에 대해 일반인의 목소리인 ‘자신의 목소리’로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든지, ‘법률전문가’인 ‘당신의 목소리’로 딱딱하고 어려운 문체를 선택해야 한다. 즉, <표 6>에서 나올 수 있는 ‘voice’는 ‘중립화’와 ‘복화술’이다. 2.3.3에서 설명한 3.4번에 해당된다.

ST 문체 (전문용어)	번역자 (일반인)	번역자 선택 문체	비고
1.ゼロワン地域 직역: 제로원지역	1.제로원 지역(변호사 수가 0~1명인 지역) 2.변호사 제로원 지역 3.제로원지역(변호사인력이 거의 없는 지역) 4.제로원지역(변호사가 0~1명인지역) 5.제로원 지역(변호사가 1명뿐이거나 아예 없 는 지역) 6.무변촌(無辯村) 7.변호사가 한명도 없거나 한명 밖에 없는 이 른바' 제로원지역' 8.제로원영역(일본 전국의 203개 재판소 지부 관내 중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한 명뿐인 곳) 9. '제로원지역' 10. '제로원지역'	N N N N N N N N V V	복화술 2명 중립화 8명
2. OJT不足 직역: OJT 부족	1. OJT 부족 2. OJT부족 3. 실무교육부족 4. 실전훈련(OJT) 부족 5. 현장훈련(OJT) 부족 6. 현장훈련부족 7. OJT부족 8. OJT(직장내 교육훈련) 9. OJT 부족 10. OJT부족	V V N N N N V N V V	복화술 5명 중립화 5명
3. 法科大学院 직역:법과대학원	1.법과대학원 2.법과대학원 3.법학대학원 4.법학전문대학원 5.법학전문대학원 6.법학전문대학원 7.법과대학원 8.법과대학원(한국의 로스쿨에 해당) 9.법과대학원 10.법과대학원	V V N N N N V V N N	복화술 4명 중립화 6명

<표 7>

1번의 ‘ゼロワン地域(제로원 지역)’은 한국의 변호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전문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들은 ‘자신의 목소리-중립화’로 풀어서 번역해준 경우가 8명이고 ‘당신의 목소리(변호사)-복화술’로 번역해준 경우는 2명이었다. 번역자는 ‘예상독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까지 확장시켜 번역해주는 ‘잉여번역’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예상독자가 ‘일반인’이었던 <표 3>의 ‘パブリシティ権(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거리두기 목소리’번역(퍼블리시티권)이 8명이나 되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번역 학습자들은 ‘번역 브리프’에서 제시한 ‘예상독자’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번역 브리프’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학생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편, 2번의 ‘OJT’는 번역 학습자가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번역자 자신의 목소리’로 번역을 했고, 의미를 몰랐던 경우는 ‘변호사의 목소리’로 번역을 해주었다¹⁵⁾. 결과적으로 2번 번역 역시 ‘복화술’로 번역하는 것이 군더더기 없는 적절한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3번의 ‘法科大學院(법과대학원)’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응되는 ‘전문용어’이다. 일대일등가처럼 학습되어 온 ‘번역 학습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번역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립화 목소리’ 중 8번 학습자처럼 ‘법과대학원(한국의 로스쿨에 해당)’번역은 ‘법률전문가’인 ‘오디언스’에게 전형적인 ‘정보과잉번역’이 될 것이다. <표 7> 역시 번역 학습자들이 ‘번역 브리프’, 특히 ‘예상독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번역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 분석 결과 정리

이상으로 Mossop의 ‘voice’이론을 바탕으로 번역 학습자들의 ‘법률텍스트 전문용어’ 일한번역을 분석해보았다. 다음 표에서는 분석 결과 도출된 ‘voice’를 번역 학습자와 텍스트별로 재정리해보았다.

15) 토론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

번역자	1	2	3	4	5	6	7	8	9	10
독자										
일반	D	D	D	N	D	D	N	D	D	D
독자1	N	D	D	D	N	D	N	D	N	N
	D	N	N	D	N	N	N	N	D	N
일반	D	D	D	D	N	N	D	N	D	N
독자2	D	N	D	N	N	N	N	D	N	N
	D	D	D	D	D	D	D	D	D	D
법률	N	N	N	N	N	N	N	N	N	N
가	V	V	N	N	N	N	V	N	V	V
독자	V	V	N	N	N	N	V	V	N	N
Voice	N2	N3	N4	N5	N7	N6	N5	N4	N4	N6
결과	D5	D4	D5	D4	D2	D3	D2	D4	D4	D2
	V2	V2	V0	V0	V0	V0	V2	V1	V1	V1

〈표 8〉

본 논문에서는 1.2절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로 “비슷한 조건(비슷한 번역능력과 배경지식)의 복수의 번역 학습자들은 동일한 ‘번역 브리프’ 상황 하의 동일 법률텍스트 ‘전문용어’에 대해 서로 같은 ‘voice’를 선택하는가?”를 제시했다. <표 8>을 보면 서로 같은 voice’를 선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3.1절, 3.2절, 3.3절 분석 참조) 번역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시간에 제시된 ‘번역 브리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연하자면, 동일 ‘번역 브리프’를 제공받은 상황에서는 ‘번역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번역자’와 ‘ST’가 동일하기 때문에 번역 학습자들의 ‘voice’ 선택은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전문용어’에 대해 ‘예상독자’가 ‘일반인’이면 번역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중립화: N’으로 설계하고, ‘예상독자’가 ‘법률전문가’라면 오디언스인 ‘법률전문가의 목소리’인 ‘복화술: V’를 선택하는 것이 ‘기능주의 이론’ 및 ‘스코포스 이론’에 부합한다. 그러나 번역 학습자들은 사전에 제시된 ‘번역 브리프’와 상관없이 주먹구구식의 기준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법률텍스트의 ‘전문용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연구문제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보도록 하자. 두 번째 연구문제는 “동일한 ‘번역 브리프’, 즉 ‘예상독자’가 같은 경우 번역자의

‘voice’ 설계는 일관되게 유지되는가?”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se1과 case2에서 ‘번역 브리프’를 동일한 ‘예상독자’ ‘일반인’으로 설정하고 동일 번역 학습자가 case1과 case2에서 선택하는 ‘voice’가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하기 <표 9>는 case1과 case2의 ‘voice’선택 결과를 따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

번역자 독자	1	2	3	4	5	6	7	8	9	10
일반 독자1	D	D	D	N	D	D	N	D	D	D
	N	D	D	D	N	D	N	D	N	N
	D	N	N	D	N	N	N	N	D	N
소계	N1	N1	N1	N1	N2	N1	N3	N1	N1	N2
	D2	D2	D2	D2	D1	D2	D0	D2	D2	D1
일반 독자2	D	D	D	D	N	N	D	N	D	N
	D	N	D	N	N	N	N	D	N	N
	D	D	D	D	D	D	D	D	D	D
소계	N0	N1	N0	N1	N2	N2	N1	N1	N1	D2
	D3	D2	D3	D2	D1	D1	D2	D2	D2	D1
전체 결과	N1	N2	N1	N2	N4	N3	N4	N2	N2	N4
	D5	D4	D5	D4	D2	D3	D2	D4	D4	D2

<표 9>

case1과 case2의 소계 결과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동일 번역 학습자가 같은 빈도수로 같은 타입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있음(6명)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번역 학습자2는 case1에서 ‘중립화 목소리’를 1번 선택했고, ‘거리두기 목소리’를 2번 선택했는데, case2에서도 같은 타입의 ‘목소리’선택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번역 학습자는 특정 문체(목소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선택 성향을 ‘번역 학습자’에게 인식 시켜주는 것이 번역학습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 결과는 ‘번역 학습자’들은 직관적, 또는 간(間)주관적으로 ‘번역 브리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체’(목소리)를 선택하면서 번역에 개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나가기

지금까지 법률번역텍스트의 '전문용어' 일한번역을 Mossop의 'voice'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번역 학습자들은 '스코포스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 전에 제시된 '번역 브리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번역학습자들은 '스코포스 이론'이 중시하는 수신자인 예상독자에게 적절한 양(정보 과잉도 아니고, 정보 부족도 아닌)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원활하고 경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르트는 번역하기(translating)는 어휘적 등가나 통사적 등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호전환작용(code-switching operatio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가능한 한 원천 텍스트 구조와의 근접성을 유지하고 싶어지며, 이로 인해 모국어로 번역할 때조차도 언어적 간섭과 오류가 발생한다(Nord 1997, 67)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흔히 그 텍스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체 텍스트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은 간(間)주관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번역 학습자들의 직관적 결정(intuitive decision)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훈련된 번역 학습자들은 졸업 후 프로 번역자로 활동할 때 "자신들의 번역결정에 대해 수신자(감수자나 고객)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하게 될"(ibid, 67)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를 포함한 번역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번역교육방식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중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¹⁶⁾. 본고에서는 기술텍스트에 대한 번역교육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번역 브리프'를 학습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현 상태를 점검하는데 Mossop의 'voice'이론이 어느 정도 유효한 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상기 이론은 'ST 지향적' vs 'TT 지향적'이지만 고려하기 쉬운 전문용어 번역에 대한 양방향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번역 학습자 스스로의 '번역주체'로서의 선택과 결정, 즉 번역자의 목소리(voice)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들은 상기 이론 등을 적용해 번역 학습자들이 자신을 '번역주체'로서 자각

16) 김진숙(2012)은 '번역강의실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신의 논문에서 번역교수자로서 연구자는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해당 번역 수업의 목표 공유 기회 및 번역론에 대한 토론 부족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p.42).

하도록 지도하고, 번역어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이 ‘원문-번역주체로서의 번역자-번역결과물의 수용자’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소논문의 성격상 분석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전문기술텍스트의 범주가 법률텍스트로 한정되었다는 점, 번역어가 일한(日韓)으로 국한되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분석 데이터의 양을 더 늘리고 법률텍스트 이외의 텍스트, 예컨대 의학텍스트 등으로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언어권과의 협업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0) 「번역학에서 ‘번역학주체’ 연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2(2): 3-26.
- 김진숙 (2012) 「번역강의실에서의 의사소통」, 『번역학연구』, 13(2): 41-63.
- 박양근 (2001) 『영문인을 위한 21세기 영문학개론』, 서울: 학문출판주식회사.
- 신지선 (2009). 「법률텍스트 번역의 특성에 입각한 교육모델 제안」, 『통역과 번역』, 11(1): 63-80.
- 전상국 (2012) 『전상국의 즐거운 마음으로 글쓰기』, 서울: 연인M&B.
- 조상은 (2004) 『사고발화법(Think-Aloud Protocol)에 나타난 일-한 번역 과정 연구: 번역단위와 가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안인경, 정혜연, 이정현 옮김 (2010) 『일반통번역 이론기초:스코포스 이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K. Reiss & H. J. Vermeer (1991)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Niemeyer]
- 이미경 (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2): 139-64
- 이종인 (2009) 『번역은 글쓰기다』, 서울: 즐거운 상상.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Harvey, Malcolm (2002) 'What's so Special about Legal Translation?', *Meta* 47(2): 177-185.
- Melinkoff, David (1963) *The Language of the Law*, Boston: Little, Brown.
- Mossop, Brian (2007) 'The Translator's intervention through voice selection', in Munday Jeremy (ed): 8-37.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Vermeer, Hans J. (1987a) 'What does it mean to translate?', *Ind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3(2): 25-33.

[Abstract]

**The Voice Choice and Intervention of the Translation Learner:
Focus on the Japanese-Korean Translation Analysis as
to the Legal Text Specialized Terms**

Park, mij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translator how to translate specialized terms in specialized texts such as medical volumes or legal documents. For example, the translator has to choose the translation style whether to translate into familiar and general terms such as ‘mad cow disease,’ or into difficult technical terms such as ‘BSE.’ Indeed, at the online Japanese translation site of the 3 large daily newspaper in Korea, the translator chooses a different style for the text under the same ‘translation brief’ such as an article translated into (TT) ‘mad cow disease(ST)’ and an article into ‘BSE’ (牛海綿狀腦症) (TT). Even at the legal document, the translator must decide whether to translate into ‘liable spouse’ or ‘liable spouse (a spouse liable to the failure of marriage)’ a style common people can understand easily. Like this, the translator comes to intervene in the translation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Mossop explains the intervention by the translator as 3 ‘voices’ as follow. That is, ‘my voice’ → ‘Neutralizing’ (the voice of the translator), ‘your voice’ → ‘Ventriloquizing’ (the voice of readers) and ‘her voice’ → ‘Distancing’ (the voice of SL author).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and stating the Japanese-Korean translation of the legal text translated by the students of Korea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the translation courses on the basis of 3 ‘voices’ of Mossop. Especially, we will review how ‘the voices (translation styles)’ designed by the

students change as to the legal text in detail from the view of the voice theory mentioned above.

▶ Key Words: voice, translation brief, skopos, legal text, specialized term.

박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조교수

ppsmjj@naver.com

관심분야: 기호학, 번역교육학, 번역 규범, 제도 번역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30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